

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 조 ~ 제 13 조 (생략)</p> <p>제 14 조 (면책)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손해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p>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누설,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</p> <p>② 이용자가 비밀번호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이를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p> <p>③ 통장의 위.변조 등 자동화기기로 위.변조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</p> <p>④ 사고신고 접수 후 처리에 필요한 상당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</p>	<p>제1조 ~ 제 13조 (좌동)</p> <p>제 14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p> <p>②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</p> <p>③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④ 이용자가 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</p>	<p>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8 조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 제 4 항 반영하여 내용수정 및 순서변경 (기존 3항,4항 내용삭제)</p>

제 15조 ~ 제 16조 (생략)	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 15조 ~ 제 16조 (좌동)	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